예 산 총 칙

2018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648,129,839	19,443,895
일반회계		593,665,448	17,809,963
특별회계		54,464,391	1,633,932
	공기업특별회계	48,292,558	1,448,777
	하수도사업 특별회계	33,150,252	994,508
Ш	상수도사업 특별회계	15,142,306	454,269
	기타특별회계	6,171,833	185,155
	의료보호비 특별회계	1,776,592	53,298
	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	2,285,251	68,558
	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	1,783,160	53,495
	주차장사업 특별회계	326,830	9,805

- 제 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2018년 채무부담 행위는 [해당없음]으로 한다.
- 제 4조 2017년 명시이월 사업은 붙임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.
- 제 5조 계속비 사업은 [해당없음]으로 한다.
-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798,228천원으로 한다.
- 제 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6,5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